

군입영휴학자 성적인정 신청서

지도교수	학과(부)장

학 과	학 년	생 년 월 일	년 월 일
학 번	연 락 처		
성 명	입 영 일 자		년 월 일

관 련 근 거

「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4조(휴학자 성적처리)
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한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교과목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 ② 교원은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수강한 후 군입대 휴학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한 학생이 학기말 시험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시험 등을 실시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.

[성적 인정 교과목 내역]

연번	교과구분	교과목번호-분반	교과목명	학점	담당교수	확인
1		-				
2		-				
3		-				
4		-				
5		-				
6		-				
7		-				
8		-				
9		-				
10		-				

성 적 인 정 신 청 절 차

◎ 군입영휴학자 성적인정 신청서 작성(성적 인정 교과목 내역 포함) → 각 교과목 담당교수 해당 교과 이수인정여부 확인(전체 교과목) → 통합행정실(학과(부)) 제출
 ※ 입영일자가 수업일수 3/4선 이후인 학생 중 해당 학기 성적 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 군휴학 신청 시 성적인정 칸에 반드시 체크(√)하고 신청

위 신청인은 ()학년도 제()학기 총 수업일수 3/4선 이후에 군입대 휴학하게 된 학생으로서, 당해학기에 수강신청한 교과목에 대하여 휴학 전에 당해학기 출석 및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성 명 : (인)